

창원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단1298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강경철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김고은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경상남도 고성군 B 전 694㎡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5.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22. 5. 27. 접수 제8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는 C을 상대로 "C은 D에 17,449,024원 및 그 중 4,990,598원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2017. 3. 27.자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37861)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7. 4.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8. 1. 26. D로부터 C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받아 같은 날 D를 대리하여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경남 고성군 B 전 6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E은 2008. 4. 27. 사망하였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들인 C, F, 피고, G 및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H의 자녀들인 I, J, K이 있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2. 5. 2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2.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022. 12. 26.을 기준으로 21,244,061원(= 원금 4,990,598원 + 지연이자 16,253,46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일자인 2008. 4. 27.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원인일자는 2008. 4. 27.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2022. 5. 23.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❷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도 “2022. 5.경 C과 소식이 닿아 ... C이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피고와 C의 사해행위는 2022. 5. 23.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자 자신이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약 당시 C의 신용상태나 구체적인 재산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으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분할협약이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약 중 C의 상속분인 1/5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지연